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불가능한 경우,”를 “불가능한 경우에”로 하고, 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”을 “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”으로 한다.

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<u>불가능한 경우</u>,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<u>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<u>불가능한 경우에</u>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<u>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